

진한(秦漢)시기 좌사(佐史)에 대한 재고찰*

김지은**

초록 ‘좌사(佐史)’는 사료상 ‘좌’(佐)·‘사’(史) 혹은 ‘좌사’로 병칭되어 표기된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종래 연구자들 역시 ‘좌사(佐史)’인지, ‘좌’·‘사’인지 명확하게 구분·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우선 본고에서는 ‘좌사’는 관질 체계에서 최하층의 ‘좌’·‘사’를 포함한 동일한 질록(秩祿)을 받는 ‘하급 관리군’을 총칭할 때 사용된 용어임을 확인하였다. 즉, ‘좌사’는 별도로 존재한 것이 아니며, ‘좌·사’로 구분·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입장이다. ‘좌’·‘사’는 현리(縣吏) 중 최말단에 배치된 질(秩)이 같으며, 직무에서도 상호 유사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첫째, ‘좌’의 자격 조건은 법률상 성인을 뜻하는 ‘장’(壯)일 뿐이지만, ‘사’의 자격 조건은 사자(史子)의 신분으로서 일정한 학습 기간을 거친 이후 시험의 합격이 전제되어야 한다. ‘좌’의 직무는 ‘좌’자의 의미대로 상급관인 색부의 보좌인 반면, ‘사’의 직무는 ‘사’자의 의미처럼 문서의 기록 및 작성에 해당한다. 셋째, ‘좌’는 색부의 보좌라는 구체적인 ‘직’이 있는 리원이지만, ‘사’는 ‘직’이 없는 ‘자격’·‘자격 소지자’로서 ‘리’가 아니다. 바로 ‘직’과 ‘자격’이라는 차이점 때문에 ‘좌’·‘사’는 비록 동질이지만, 표기할 때는 습관적으로 ‘좌’가 ‘사’보다 선행되거나, ‘좌’가 ‘사’보다 상급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자격 소지자’의 의미를 가진 ‘사’는 결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다. 따라서 문서 행정이 발달하고, 문서의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습제에 의해 임용되던 ‘사’만으로는 행정상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사’의 성격에도 변화가 발생해 전한 중기 이후부터 ‘사’는 종래 ‘자격’의 의미와 함께 저급 식자능력의 유무 표현할 때도 사용되게 된다.

주제어 진(秦)·한(漢)시기, ‘좌’(佐), ‘사’(史), ‘직’(職), ‘자격’, 이야간간(里耶秦簡), 악록진간(嶽麓秦簡), 장가산한묘죽간(張家山漢墓竹簡)(336호묘)

* 본 연구는 제21회 南雲古代學研究基金(2022) 및 2023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0448A-20230018).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1. 머리말: ‘좌’(佐)·‘사’(史)인가? ‘좌사’(佐史)인가?

진(秦)·한(漢)시기 지방통치의 근간이 되는 기층 행정 단위는 바로 현(縣)이다. 현은 아래의 향(鄉)과 리(里)라는 공간적인 조직을 총괄하고, 경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의 통치 의지를 기층조직에 최대한 관철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당시 지배체제 및 그 성격을 해명하는 데 있어 현의 조직과 기능을 밝히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였다. 그 결과 한현(漢縣)의 면모는 일찍이 거의 밝혀졌다.¹ 하지만 진현(秦縣)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한승진제’(漢承秦制)라는 통념에 입각해 한현과 비슷한 단계 정도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다 1976년 호북성(湖北省) 운몽(雲夢)지역에서 『수호지진묘죽간』이 출토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특히 현 내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현의 생산기능을 담당한 실무 경제관 색부(嗇夫)와 관련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었다.² 색부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연구 경향은 2,000년대 이후 이야진간(里耶秦簡)과 악록진간(嶽麓秦簡)이 차례로 공간되면서 점차 다양화된다. 기존에 ‘령(令)의 사(史), 즉 령을 보좌하는 사’³ 정도로 이해되었던 영사(令史)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⁴ 최근에는 『악록서원장진간

1 嚴耕望(1974), 第5章「縣廷組織」, 『中國地方行政制度史』上編, 臺北: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專刊45, pp. 216-244.

2 이성규(1989a), 「秦의 山林藪澤開發의 構造: 縣廷 嗇夫組織과 都官의 分析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29; 高敏(1979), 「‘有秩’非‘嗇夫’辨」, 『文物』 1979-03, p. 71; 裘錫圭(1992), 「嗇夫初探」, 『古代文史研究新探』, 江蘇古籍出版社; 鄒水杰(2017), 「秦簡“有秩”新證」, 『中國史研究』 2017-03 등이 있다.

3 孫星衍 等輯·周天游 點校(1990), 「漢官舊儀」卷下『漢官六種』, 北京: 中華書局, p. 49, 「更令曰令史, 丞吏曰丞史, 尉吏曰尉史。」

4 令史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우선 국내 연구로는 김동오(2014), 「秦帝國시기 縣廷의 구조: 『里耶秦簡』‘令史’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6; 이성규(2014), 「秦帝國 縣의 組織과 機能: 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53집 1호; 김종희(2014), 「秦代 縣의 曹조직과 地方官制: 里耶秦簡에 나타난 遷陵縣의 토지 재정운영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8가 있다. 국외 연구로는 王斌帥(2017), 「秦漢縣廷令史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

(사)』와 『수호지진간』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치리율(置吏律)의 분석을 통해 현의 소리(少吏), 즉 색부·영사를 비롯한 좌(佐)·사(史)에 대한 관심도 높다.⁵

본고 역시 진한제국 시기 현 소리의 최하층에 위치한 ‘좌·사’에 관한 것이다.⁶ 구체적으로는 관색부 휘하에 설치된 ‘좌·사’이다. 그런데 ‘좌·사’에 관한 사료를 살펴보면, 어떤 곳에서는 ‘좌’와 ‘사’로 분리되어 사용되며, 또 어떤 곳에서는 ‘좌사’로 병칭되어 마치 하나의 개념처럼 사용되기도 한

文: 魯家亮(2018b), 「里耶秦簡所見秦遷陵縣的令史」, 『簡牘學研究』第7輯,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鄒水傑(2016), 「簡牘所見秦代縣廷令史與諸曹關係考」, 『簡帛研究2016』春夏卷,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劉向明(2009), 「從睡虎地秦簡看縣令史與文書檔案管理」, 『中國歷史文物』2019-03; 劉向明(2004), 「從出土秦律看縣“令史”一職」, 『齊魯學刊』2004-03; 劉曉滿(2011), 「秦漢令史考」, 『南都學壇』2011-04; 土口史記(2015), 「秦代の令史と曹」, 『東方學報』90을 참조하라.

- 5 이성규(2022), 「秦帝國의 ‘新地’統治策 縣吏難의 타개책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61집 1호; 유창연(2022), 「秦代 縣吏의 運用과 ‘新地’統治」, 『中國古中世史研究』 65; 西真輝(2021), 「秦漢代における佐史の變遷について」, 『東洋史研究』 79(4); Tsang Wing Ma (2017), “Scribes, Assistants, and the Materiality of Administrative Documents in Qin-Early Han China: Excavated Evidence from Liye, Shuihudi, and Zhangjiashan,” *T'oung Pao* 103-4-5.
- 6 秦簡에서 확인 가능한 縣吏 중 佐職에 해당하는 것으로 令佐·獄佐·官佐가 있고, 史職에 해당하는 것으로 令史·獄史·尉史·官史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漢書』 「百官公卿表」에는 縣吏와 그들의 秩級을 간단히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는 100석 이하 斗食吏와 佐史를 少吏로 분류하고 있는데, 바로 令史의 秩이 斗食에, 畜夫 휘하 官佐·官史의 秩이 가장 낮은 佐史에 해당한다. 獄史와 尉史는 令史와 동류이며[嚴耕望(1974), p. 222], 獄史는 치옥을 담당한 令史의 속칭 또는 약칭에 불과하다[이성규(2014), p. 61]. 즉, 令史·獄史·尉史는 令史라는 범칭으로 묶을 수 있다. 令佐 또한 獄佐로 취급[水間大輔(2016), 「里耶秦簡《遷陵吏志》初探-通過與尹灣漢簡《東海郡吏員簿》的比較-」, 『簡帛』 12, 上海古籍出版社, p. 191]하기 때문에 令佐와 獄佐도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그런데 令史의 직무는 令佐의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며[趙岩(2014), 「秦令佐考」,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01; 孫聞博(2017), 「里耶秦簡《遷陵吏志》考釋: 以‘吏志’·‘吏員’與‘外群體爲中心」, 『國學學刊』 201703, p. 13], 이 둘은 상호 간 轉任이 빈번하기 때문에 동일한 秩級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令佐·獄佐, 令史·獄史·尉史는 모두 斗食에 속한다. 한편, 高震寰은 尉史를 官佐의 범주에 넣었다[高震寰(2021), 「對里耶秦簡《遷陵吏志》的另一種假設」, 『法律史譯評』 9, pp. 41-46]. 본고에서 고찰하는 ‘佐’·‘史’는 斗食이 아닌 佐史의 秩에 속하는 ‘官佐’와 ‘官史’를 뜻하는 佐史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다. 이러한 차이점은 “吏自佐史以上”이라는 동일한 구문을 『수호지진간』(좌·사)과 『악록서원장진간(오)』(좌사)에서 다르게 표점한⁷ 것처럼, 단순히 정리소조(整理小組)에 의한 자의적인 표점의 결과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직(史職)⁸에 관한 연구 중 ‘좌사’를 사직의 일종⁹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좌’와 ‘사’인지, 혹은 ‘좌사’인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인 사료들 몇 가지를 [표 1]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표 1] 『이년율령』에서 좌사의 표기: ‘좌’·‘사’, ‘좌사’

	『二年律令』 ¹⁰ 「置吏律」 簡213-214	(1) 郡守二千石官、縣道官言邊變事急者，及吏遷徙、新爲官，屬尉、 <u>佐以上毋乘馬者</u> ，皆得爲駕傳。
佐·史	『二年律令』 「史律」 簡475-476	(2) 試史學童以十五篇，能風(諷)書五千字以上，乃得爲 <u>史</u> 。有(又)以八體(體)試之，郡移其八體(體)課大(太)史，大(太)史誦課， <u>取最(最)一人以爲其縣令史</u> ，殿者勿以爲 <u>史</u> 。三歲壹并課，取最(最)一人以爲尙卒史。
佐史	『二年律令』 「賜律」 簡291-293	(3) 賜不爲吏及宦皇帝者，關內侯以上比二千石，卿比千石，五大夫比八百石，公乘比六百石，公大夫、官大夫比五百石，大夫比三百石，不更比有秩，簪裹比斗食， <u>上造、公士比佐史</u> 。毋爵者，飯一斗、肉五斤、酒大半斗、醬少半升。司寇、徒隸，飯一斗、肉三斤、酒少半斗、醬什分升一。

- 7 陳偉 主編(2014), 『秦簡牘合集[壹]上: 睡虎地秦墓簡牘』, 武漢: 武漢大學出版社[이하 『수호지진간』으로 약칭], 簡10-11, “吏自佐、史以上負從馬、守書私卒, 令市取錢焉, 皆遷(遷).”; 陳松長 主編(2017), 『嶽麓書院藏秦簡(伍)』, 上海: 上海辭書出版社[이하 『악록진간(5)』로 약칭], pp. 48-49, 簡30-32, “廿六年正月丙申以來, 新地爲官未盈六歲節(節)有反盜, 若有敬(警), 其吏自佐史以上去徭使, 私謁之它郡縣官, 事已行, 皆以彼陳(被陣)去敵律論之. 吏遺許者, 與同臬. 以反盜敬(警)事故 卜, 繇使不用此令. •十八.”
- 8 王博(2021), 「簡牘所見史職與秦漢基層行政」,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朱騰(2017), 「秦縣中的史類吏員研究」, 『中國人民大學學報』2017-06; 單印飛(2018), 「秦代縣級屬吏的遷轉路徑: 以里耶秦簡爲中心」,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8-01.
- 9 聶姣豔(2014), 「秦漢“史”職研究」, 雲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pp. 16-27.
- 10 彭浩·陳偉·王藤元男 主編(2007), 『二年律令與奏讞書』(張家山二四七號漢墓出土法律文獻釋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이하 『이년율령』으로 약칭].

(1)~(3)은 모두 한초(漢初) 여후(呂后)시기의 『이년율령』이다. 동일한 율령 내에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해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과 (2)에서는 ‘좌’와 ‘사’의 존재가 각각 확인된다. 한편, 『이년율령』에서는 (3)을 포함해 사율(賜律)에서만 ‘좌사’의 용례가 확인된다. (3)의 좌사는 ‘좌’·‘사’일까 ‘좌사’일까? (3)은 작민(爵民)에 대한 사여를 나열하지만, 그 사여의 기준이 바로 관질(官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사율이란 본래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유작자(有爵者)에게도 그 예우가 확대된 것이다.¹¹ 따라서 (3)의 ‘좌사’ 역시 (1)과 (2)에서 확인한 ‘좌’·‘사’로 볼 수 있다. 다만 (3)의 전체적인 구조가 사여받을 대상자들이 가진 작등(爵等)을 사여의 기준이 되는 관질의 범주로 분류하여 양자를 직접 대응시키는 형태인 것에서, (3)의 ‘좌사’는 관질 체계에서 최하층의 ‘좌’·‘사’를¹² 포함한 동일한 질록(秩祿)을 받는 ‘하급 관리군’을 총칭할 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좌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한 것이 아니며, (3)의 ‘좌사’ 역시 ‘좌·사’로 구분해서 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좌’와 ‘사’는 분명 따로 존재하지만, 『이야진간』 「천릉리지」(遷陵吏志)에서는 ‘좌’와 ‘사’의 구분이 다시 모호해진다. 「천릉리지」는 특정 시기 천릉현(遷陵縣)의 리원(吏員) 구성과 양태를 전하는 자료다. 「천릉리지」에 의하면, 모년 천릉현 리원의 정원은 본래 영사(令史) 28명(:18명),¹³ 관색부(官齋夫) 10명(:5명), 교장(校長) 6명(:2명), 관좌(官佐) 53명(:24명), 뇌감(牢監) 1명,

11 이성규는 『二年律令』 「傳食律」과 「賜律」에서 有爵者를 官秩에 준하여 대우한 것은 이 두 율이 본래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고, 또 그 예우가 유작자에게 확대된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성규(2003), 「秦漢 帝國의 官과 爵의 相輔 機能: 張家山竹簡 〈二年律令〉을 중심으로」, 韓國古代社會研究所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강좌 한국고대사』 3, pp. 205-209].

12 (漢)班固 撰; (唐)顏師古 注; 楊家駱 主編, 『漢書』,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卷19上 「百官公卿表」, p. 742, “縣令、長, 皆秦官, 掌治其縣. 萬戶以上爲令, 秩千石至六百石. 減萬戶爲長, 秩五百石至三百石. 皆有丞、尉, 秩四百石至二百石, 是爲長吏. 百石以下有斗食、佐史之秩, 是爲少吏.”

13 괄호 안의 숫자는 바로 각 官별로 규정된 吏員의 정원에서 缺과 繇使로 부재한 吏員을 제외한 현재 遷陵縣에 남아 있는 吏員의 수를 표시한 것이다.

장리(長吏) 3명(1명)으로 총 103명이지만, 결(缺)과 요사(繇使)로 현재 51명만이 있다고 한다.¹⁴ 그런데 <리지>에 기록된 각 관직별 정원의 숫자를 모두 합산해 보면 실제 총 인원은 그보다 2명이 모자란 101명이다. 즉, 문서 자체가 임의적이고 불완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친릉리지>의 일부분으로 추측되는 간(簡)8-1137에서도 모년 친릉현의 총 정원이 104명¹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비록 간9-633이 자료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현 내 리원의 구성 및 대략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야진간』의 행정문서에서 빈번히 확인되는 향사(鄕史)·사공사(司空史) 등의 관사(官史)가 「친릉리지」에는 보이지 않고, 대신 관좌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견해가 도출되었다. 견해들은 크게 첫째, 관사가 관좌에 포함되어 카운트되었기 때문에 「친릉리지」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¹⁶ 둘째, 관사는 본래 원외(員外)의 존재이기 때문에 「친릉리지」에 불포함되었다¹⁷는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14 陳偉 主編(2018), 『里耶秦簡牘校釋(第2卷)』, 武漢: 武漢大學出版社[이하 『이야진간(2)』로 약칭], 簡9-633, “遷陵吏志: 吏員百三人, 令史廿八人, 【其十】人繇(徭)使, □□十八人, 官畜夫十人, 其二人缺, 三人繇(徭)使, 今見五人, 校長六人, 其四人缺, [第2欄] 今見二人, 官佐五十三人, 其七人缺, 廿二人繇(徭)使, 今見廿四人, 牢監一人, [第3欄] 長吏三人, 其二人缺, 今見一人, 凡見吏五十一人, [第4欄].”

15 陳偉 主編, 何有祖·魯家亮·凡國棟 撰著(2012), 『里耶秦簡校釋(第1卷)』, 武漢: 武漢大學出版社[이하 『이야진간(1)』로 약칭], 簡8-1137, “吏凡百四人, 缺卅五人, 今見五十人, □.”

16 김동오(2020), 「秦帝國시기 縣史 운용과 지방통치: <里耶秦簡> 遷陵吏志 분석을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57, pp. 15-16; 오준석(2020), 「秦代 ‘以吏爲師’와 ‘史’職의 위상」, 『東洋史學研究』 152, pp. 17-18; 土口史記(2015), p. 40; 魯家亮(2018a), 「里耶秦簡所見秦遷陵縣吏員的構成與來源」, 『出土文獻』 13, pp. 217-218. 김동오·오준석·土口史記는 모두 官의 구성원은 官畜夫·佐·史이기 때문에, <친릉리지>에서 색부를 보좌하는 官佐의 수에는 史도 포함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魯家亮은 본문에서 <친릉리지>를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야진간에서 몇몇 吏員의 승진 경로를 분석하면서 官佐에 庫佐를 비롯해 鄕史·田部史·司空史 등을 포함하고 있다.

17 이성규(2022), pp. 182-192; 孫聞博(2017), pp. 11-16. 孫聞博은 이야진간에서 실체가 분

수 있다. 그런데 상기 견해를 주장하는 연구자들 간에도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는 ‘좌’·‘사’의 내원이나 그들의 직무에 관한 입장이 모두 제각각이다. 이러한 현상은 ‘좌’·‘사’를 동일하게 관직이라는 관점에 입각해, 양자를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이해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분명 ‘좌’와 ‘사’는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단,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좌’·‘사’를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개체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좌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열릴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좌’·‘사’에 대해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진행 방향은 2장에서는 우선 ‘좌’·‘사’의 내원을 확인한 다음, 『악록진간(4)』 치리율의 분석을 통해 ‘좌’로 충원되는 자들의 다양성을 고찰하려 한다. 2장의 ‘좌’·‘사’의 내원 문제는 이어지는 3장 ‘좌’·‘사’의 직무상 상호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단서가 될 것이다. 4장에서는 ‘사’의 의미와 성격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이년율령』에서 ‘사’의 의미, 즉 ‘자격’ 혹은 ‘자격 소지자’로서의 ‘사’의 의미를 『수호지진간』부터 최근 공간 된 『장가산한묘죽간(336호묘)』까지 일관되게 적용하여 관련 사료들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좌’·‘사’의 내원

‘좌’와 ‘사’의 내원을 전하는 자료로는 『수호지진간』, 『이년율령』, 『악록진간』이 있다. 이하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 (1)-① “史·卜의子是 17세(부터) 학습한다. 史學童·卜學童·祝學童이 3년

명히 있지만 <천릉리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史·令佐·獄佐·尉史·士吏를 모두 員外群體라는 개념으로 묶어 설명하였다. 이성규는 史가 疇人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員外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간 학습하면, 學俛는 (이들을) 태사·태복·태축에게 데리고 가며, 郡史學童은 郡守에게 데리고 가서 모두 8월 삭일에 시험을 본다.”¹⁸

(1)-② “史學童은 15편을 시험보는데, 5천 자 이상을 암송하고 쓸 수 있어야 이에 史가 될 수 있다.”¹⁹

(2) “佐에는 반드시 壯 이상인 (자를) 임용하되, 새로 부적합한 士伍를 임명해서 안 된다.”²⁰

(3) 置吏律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縣이 無秩의 小佐를 제수할 때 각각 그 縣의 (사람을) 제수하되, ㉔모두 不更 이하 士伍에 이르는 史(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택해 佐로 삼아라.

부족하면, ㉕ ① 君子의 子·大夫의 子·小爵(을 가진 자) 및 ② 公卒·士伍의 子로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를 추가로 제수해 (정해진) 인원을 갖추어라.

단, 新黔首에게는 강제하지 말며, 연령이 60(세)를 초과한 자는 佐로 삼지 말라.

㉖ 人屬弟·人復子를 佐吏로 삼고자 한다면, ….”²¹

(1)-①과 (1)-②은 『이년율령』 사율(史律)의 일부로, ‘사’(史)가 되는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조문들에 의하면, ‘사’는 사학동(史學童)으

18 『이년율령』 「史律」, p. 296, 簡474, “史、卜子年十七歲學。史、卜、祝學童學三歲, 學俛將詣大(太)史、大(太)卜、大(太)祝, 郡史學童詣其守, 皆會八月朔日試之。”

19 『이년율령』 「史律」, 簡475, “試史學童以十五篇, 能風(諷)書五千字以上, 乃得爲史。”

20 『수호지진간』 「內史雜」, 簡190, “除佐必當壯以上, 毋除士五(伍)新傳。”

21 陳松長 主編(2015), 『嶽麓書院藏秦簡(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이하 『약록진간(4)』로 약칭], 簡210-211, “置吏律曰: 縣除小佐、毋(無)秩者, 各除其縣中, 皆㉔擇除不更以下到士五(伍)史者, 爲佐。不足, ㉕益除 ① 君子子、大夫子、小爵 及 ② 公卒、士五(伍)子年十八歲以上備員。其新黔首勿強, 年過六十者勿以爲佐。㉖人屬弟、人復子欲爲佐吏…”

로 학실(學室)에서 3년간 학습한 이후 시험에서 정해진 규정을 통과해야만 될 수 있었다. (2)는 ‘좌’의 임용 조건이다. 여기서는 ‘사’와는 달리 연령, 즉 법률상 성인을 뜻하는 ‘장(壯)²²이라는 규정만이 언급되어 있다. 즉, ‘좌’와 ‘사’는 기본적으로 선발 기준과 방법이 달랐던 것이다. 이렇듯 선발에서부터 ‘좌’와 ‘사’가 명백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좌’로 충원되는 자들의 다양성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3)을 살펴보자.

(3) 『악록진간(4)』 치리울은 제좌(除佐)의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㉔에서는 4급 작(爵)의 불갱(不更)과 무작(無爵)의 사오(士伍)가 등장한다. 따라서 (3)도 (2)처럼 좌(佐)의 조건으로 성년이라는 연령 규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뒤이어 (2)에는 없는 ‘사’라는 조건²³도 함께 부기(附記)되어 있다. (3)·㉔의 조건들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㉔ ‘부적(傅籍)된 자(성년)+사(史)인 자(者)’로 정리할 수 있다. 즉, ㉔는 ‘사’가 ‘좌’가 된다는 의미로, 바로 이 점 때문에 ‘좌’와 ‘사’의 구분이 다시 모호해지는 인상을 받는 것이다. 과연 (2)와 (3)의 조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3)·㉔와 (3)·㉔는 ‘좌’가 부족한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이다. 첫 번째 대

22 秦代 ‘壯’의 연령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睡虎地秦墓竹簡』 정리소조는 ‘장’을 30세 이상으로 이해하였다. 그 밖에 17세·20세로 보는 견해도 있다. 『秦簡牘合集(壹)』에서는 각 학설들(黃今言과 高恒은 30세, 林劍鳴은 17세, 劉向明은 20세를 주장)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陳偉 主編(2014), pp. 146-147]. 본고는 수호지진간의 묘주 흉가 19세에 쓰여진 것을 비롯하여 佐의 史의 초임 연령의 차이를 고려해 ‘장’을 법률상의 성년(17세 이상)으로 해석한 이성규와 鶴間和幸의 견해를 따랐다(이성규(1989b),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그 性格: 縣의 組織과 그 機能을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31, pp. 70-71; 鶴間和幸(2018), 『始皇帝의 遺産: 秦漢帝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pp. 12-20].

23 치리울에서 제좌의 조건 중 하나인 ‘사’에 대해 김동오(2020)·이성규(2020)·금재원(2018)「秦代 ‘新地’ 吏員의 구성과 그 한계」, 『中國古中世史研究』 49·노가량(2018b) 등 대다수는 『이년율령』의 ‘사’와 동일하다고 본 반면, 오준석(2020)은 ‘사’를 일정 정도 식자능력을 갖춘 자로 해석하였다.

안은 ㉑이다. ㉑에서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18세라는 연령이다. 수호지진간 11호의 묘주(墓主)인 희(喜)가 진소왕(秦昭王) 45년(B.C. 262)에 출생, 진시황(秦始皇) 원년(B.C. 246)에 부(傅)한 것을 고려하면,²⁴ 무작 사오의 경우 당시 신부(新傅)되는 시점은 만 16세 정도다. 따라서 18세라는 연령 역시 법률상 성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즉, ㉑에서는 제좌의 ㉑‘부적된 자(성년)+사인 자’라는 조건 중 연령 조건은 고수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라는 조건은 고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㉑의 ‘급’(及)자와 ‘급’자 전후에 공통적으로 위치한 ‘자’(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급’자는 두 개의 글자나 구절을 연결할 때 쓰는 접속사다. ㉑에서는 ‘급’자를 기준으로 뒷부분은 사오·공졸(公卒)의 무작을 가진 자들이 나열되고 있다. 또한 ‘급’자의 앞부분에도 소작(小爵)이 있는 것으로 추측건대, ㉑는 전체가 작과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급’자의 앞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급’자 앞에 나열된 대상은 군자자(君子子)·대부자(大夫子)·소작이다. 이 중 대부(大夫)는 5급 작에 해당한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소작은 미성년자가 받는 작위의 총칭이다. 남은 대상은 군자(君子) 뿐이다.

군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학계에서 이견이 분분하다. 특히 본 조문과 관련해, 악록진간 정리소조는 군자가 대부보다 먼저 언급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대부보다 높은 작위를 가리킨다고 하였다.²⁵ 진(秦)의 20등작은 경(卿)(10급 이상)·대부(9-5급)·사(士)(4-1급)의 층급으로 획분이 가능하다.²⁶ 만약 군자가 정리소조의 견해처럼 대부보다 높다면, 군자는 경급(卿級: 10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악록진간(3)』 「주열서」(奏讞書) 안례

24 『수호지진간』 「葉書」, 簡45壹, “卅五年, 攻大壘(野)王。十二月甲午鷄鳴時, 喜產。”; 簡8貳, “今年, 喜傅。”

25 『악록진간(4)』, p. 121; 周海鋒(2017), 「嶽麓書院藏秦簡《置吏律》及相關問題研究」, 『出土文獻與法律史研究』 6, pp. 136-137.

26 孫聞博(2016), 「二十等爵確立與秦漢爵制分層的發展」, 『中國人民大學學報』 2016-01.

14를 통해 군자와 대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안례 14는 진왕(秦王) 정(政) 22년(B.C. 225) 4월 을축(21)일, 군자의 아들인 학(學)이 자신을 오대부(五大夫) 풍무택(馮毋擇)의 아들인 계(癸)라고 사칭하며, 생계를 위해 2만 전과 곡식의 종자 및 양식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한 사건이다.²⁷ 즉, 학이 자신을 군자의 아들이 아닌 오대부 풍무택의 아들이라고 남을 속인 것은 바로 군자가 오대부보다 급이 낮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9급 오대부는 대부급(9-5급)에 속한다. 따라서 군자는 대부급보다 높은 경급이 아닌, 그보다 낮은 사급(士級: 4-1급)에 속한다.²⁸ 그렇다면 본 조문의 군자는 4급 불갱에서 1급 공사(公士)의 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군자가 4급 불갱에서 1급 공사의 작을 뜻하고, 뒤 이어지는 대부는 5급 작, 소작 역시 작을 가리킨다면, ㉞의 문장구조는 ‘급’자의 앞뒤가 각각 하나의 범주를 구성하는 이른바 ‘상이한 범주의 구성(A·B及C)’에 속한다.²⁹ 즉, ㉞는 ‘급’자를 기준으로 작의 유무를 구분한 것이다.

한편, ‘급’자의 문법을 따져보면, ㉞에서는 주 29에서 인용한 조문의 ‘무기’처럼 유작·무작을 모두 포괄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은 바로 ‘급’자 전후에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자’(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는 누구의 ‘자’인가? 일반적으로 한 조문 안의 문장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㉞‘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로 앞 문장인 ㉜와 관련해 ‘사’의 ‘자’, 즉 ‘사자’(史子: 史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㉜에 따르면, ‘사자’가 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은 17세이다. 이것을 ㉞의

27 朱漢民·陳松長 主編(2013), 『嶽麓書院藏秦簡(參)』,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pp. 223-235.

28 李珣凝(2020), 「秦簡“君子”身分再探」, 『古文字研究』 33, pp. 408-409.

29 이해를 위해 『이년율령』 簡27, “鬪而(以鈹)及(金鐵銳·錘·錐)傷人, 皆完爲城旦舂”를 예로 들어 보자. ‘及’을 기준으로 앞의 鈹, 뒤의 金鐵銳·錘·錐는 모두 무기이다. 그런데 무기를 鈹과 金鐵銳·錘·錐로 구분한 이유는 바로 刃의 유무 때문이다. 즉, 이들 무기 중 鈹은 刃이 갖추어져 있는 무기를 의미하며, 이것과 구분되어 급 뒷편의 金鐵銳·錘·錐는 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무기를 열거한 것이다[김병준(2018), 「표지로서의 虛辭: 秦漢시기 법률 속 ‘及’의 어법적 기능」, 『中國古中世史研究』 48, pp. 39-44].

연령 조건과 결부 지어 생각해 보면, ⑥의 ‘사자’는 최소 1년 이상은 학습한 자들이지만, 아직은 ‘사’가 아닌 자들인 것이다[非史]. 예컨대 『악록진간(6)』 간252-255에서 중현(中縣)의 사학동으로 시험에 불합격해 ‘사’가 되지 못한 자들에 대해 리(吏)가 되기를 꺼려 고의로 불합격한 것이라 판단하고, 요동현(遼東縣)의 관좌(官佐)로서 4년 복무시키자는 처벌 관련 법령이 바로 ‘사자’지만 ‘비사’(非史)로서 ‘좌’가 된³⁰ 구체적인 실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어쨌든 (3)의 ④·⑥ 조건 역시 (2)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방점을 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3)·㉔는 뒷부분이 결간이기 때문에 연령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증은 불가하다. ‘인속제’(人屬弟)나 ‘인복자’(人復子)도 모종의 요건을 갖추면 좌리(佐吏)가 될 수 있다는 대의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인속제’는 타 조문에서는 ‘인제자’(人弟子)³¹로도 쓰인다. ‘인속제’·‘인제자’에는 공통적으로 ‘제’(弟)자가 있다. 주지하듯이 ‘제’·‘제자’란 학교·학실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자를 뜻한다. 진제국은 사설 학단의 발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관학(官學)을 중심으로 ‘이리위사’(以吏爲師)를 제도화하였다.³² “리(吏)는 서(書)를 배우는 15세 미만(의 아이)를 사인(舍人)으로 삼지 말라”는 규정이 그 구체적인 사례다. 하지만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리위사’를 제도화했다는 것은 역으로

30 陳松長 主編(2020), 『嶽麓書院藏秦簡(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이하 『악록진간(6)』)으로 약칭), 簡252-255, “中縣史學童今茲會試者凡八百卅一人, 其不入史者百一十一人. 臣聞其不入者秦(大)抵惡爲吏而與其口繇(徭)故爲詐(詐), 不冝(肯)入史, 以避爲吏. 爲詐(詐)如此而毋罰, 不便. 臣請: 令秦史遣以爲遼東縣官佐四歲, 日備免之. 日未備而有遷(遷)舉, 因處之遼東. 其有耐舉, 亦徙之遼東, 而皆令其父母、妻子與同居數者從之, 以罰其爲詐(詐), 便. 臣昧死請. 制曰: 可. 廿九年四月甲戌到胡陽. 史學童詐(詐)不入試令出廷丙廿七.”

31 『악록진간(4)』, 簡156-157, “繇(徭)律曰: 發繇(徭), 興有爵以下到人弟子、復子, 必先請屬所執灋, 郡各請其守, 皆言所爲及用積徒數, 勿敢擅興, 及毋敢擅傳(使)放童、私屬、奴及不從車牛.”

32 오준석(2020), p. 10, 각주 30 참조.

[표 2] 악록진간 치리률: 좌(佐)의 임용조건

선발단계	자격	조건	
1단계	史	4급 不更-1급 公士인 史(壯)	無爵인 史(壯)
2단계	史의 子[非史]	4급-1급 史子+(5급 史子+小爵者)	無爵 史子(18세 이상)
3단계	人屬弟[非史] 人復子	識字 능력	

※ 1단계·2단계의 ■은 유작(有爵)을 표시함.

당시 여전히 사학(私學)이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본 조문의 ‘인속제’·‘인제자’는 ‘(사)인에게 속한 제’·‘(사)인의 제자’로서, 바로 사학에서 학습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복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정확한 실체는 알 수 없다.³³ 하지만 명백한 것은 인속제나 인복자도 ‘사’가 아니라는 것이다[非史]. 여기까지가 (3)에 관한 분석이며, 간단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토대로 (2)와 (3)의 제좌(除佐) 조건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좌’를 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장(壯), 즉 연령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성인이기만 하면, 그의 식자능력과는 무관하게 ‘좌’에 임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有事請殿(也), 必以書, 毋口請.”³⁴이라는 규정을 떠올리면, 현(縣)은 식자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자보다는 갖춘 자를 선호했을 것이다. 특히 시험을 통해 능력을 공인받은 ‘사’가 우선적인 선호 대상이었음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즉, (3)은 제좌의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연령 조건 이외 선호 조건인 ‘사’→‘사자’[非史]→‘인속제’·‘인복자’[非史]를 순차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사’는 ‘좌’의 여러

33 ‘人復子’에 대해 악록진간 정리소조는 “人復復子の 약칭으로 요역이 면제된 자의 子를 뜻한다”고 하였고, 京都大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주석하였다[『악록진간(4)』, p. 166, 주석 71 참조; 『秦代出土文字史料の研究』班: 齋藤賢·畑野吉則·藤井律之·宮宅潔·宗周太郎·目黒杏子(2018), 『嶽麓書院所藏簡《秦律令(壹)》譯注稿その(二)』, 『東方學報』93, p. 46].

34 『수호지진간』 『內史雜』, 簡188.

대상자 중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역시 ‘좌’와 ‘사’는 따로 떼어서 구분해야 하며, 그래야만 면직(免職) 시 ‘사’ 이상은 어사(御史)가, 속(屬)·위좌(尉佐)·유질리(有秩吏)는 집행(執灑)이 처리하는 이원적인 체계가 존재³⁵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좌’의 다양한 대상자 중 ‘사’가 우선적인 선호 대상이라면, 장기간 ‘좌’의 직위를 얻지 못한 ‘사’의 존재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이야진간』 간8-269, 영사(令史) 구(鉤)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4) 資中令史陽里鉤伐閱: AI

十一年九月隲爲史. AII

爲鄉史九歲一日. AIII

爲田部史四歲三月十一日. AIV

爲令史二月. AV

□計. BI

年卅六. BII

戶計. CI

可直司空曹. DI³⁶

(4)는 영사 구의 별열간이다. 구는 촉군(蜀郡) 자중현(資中縣) 출신으로, 진왕 정 11년(B.C. 236)에 시험에 합격해 ‘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향사(鄉史)로 9년 1일을 근무하고, 4년 3개월 11일 동안 전부사(田部史)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영사로 승진한다. 즉, 구는 도합 13년 동안 관사(官史)로서 시사했

35 『악록진간(4)』, 簡347-349, “□其不能者, 皆免之. 上攻(功)當守六百石以上, 及五百石以下有當令者, 亦免除. 攻勞皆令自占, 自占不□實, 完爲城旦. 以尺牒牒書, 當免者人一牒, 署當免狀, 各上, 上攻所執灑, 執灑上其日, 史以上牒丞[相], 御史, 御史免之, 屬, 尉佐, 有秩吏, 執灑免之, 而上牒御史丞相.”

36 『이야진간(1)』, 簡8-269.

을 뿐 ‘좌’에 임용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사’ 출신자는 자신이 ‘사’로 선발된 것을(諭爲史) 이력에 특별히 명시한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사’의 조건을 갖춘 자에게는 ‘비사’자에 비해 모종의 혜택이 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구가 ‘사’ 출신이지만 오랜 기간 ‘좌’에 임용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로는 ‘좌’와 ‘사’는 선발부터 면직에 이르기까지 체계를 달리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비록 ‘좌’의 대상으로 ‘사’가 선호되어 ‘사’ 중에서 ‘좌’가 되는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양자는 애초부터 확연히 다른 성격의 집단이다. 환언하면, ‘사’는 ‘좌’가 될 수 있지만, 미자격자인 ‘좌’는 ‘사’가 될 수 없다. 진제국 시기는 만성적인 관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이때 비록 우선적인 선호 대상이라지만 ‘사’로써 ‘좌’를 충당한다면, 관사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의 범위는 축소될 여지가 있다. 즉, 되도록 ‘좌’는 ‘비사’로, ‘관사’는 ‘사’로 충당하는 방법이 관리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후술하겠지만 관사·관좌를 불문하고 관에서 시사(視事)한 경우, ‘직’(職)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근무의 공·로는 동일하게 인정되며, 향후 승진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가 ‘좌’의 우선적인 선호 대상이기는 하지만, 장기간 ‘좌’의 직위를 얻지 못한 ‘사’가 출현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좌’·‘사’의 직무

다음으로는 ‘좌’와 ‘사’의 직무를 고찰해 보겠다. ‘좌’와 ‘사’의 직무는 별반 차이가 없다 혹은 모두 하급 서기관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주장은 대개 『이야진간』의 부서 간 왕래 문서를 근거로 들고 있다. 부서 간 왕래 문서에는 ‘모(某:이름)+수(手)’ 또는 ‘모+반(半)’·‘모+발(發)’, ‘모+이래(以來)’ 형식의 용어가 있다. ‘모+수’는 문서를 서사 또는 초록한 자

를 표시한 것이고, ‘모+반’·‘모+발’은 문서를 접수·개봉한 자를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모+이래’는 문서를 직접 갖고 해당 관서에 도착한 것을 표시한 것이다. 즉, ‘모수’(某手)·‘모반’(某半)·‘모발’(某發)·‘모이래’(某以來)로 표기된 자들은 모두 천릉현(遷陵縣)의 문서 행정담당자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수³⁷·반·발·이래 한 자의 이름과 관직을 분석해 보면, ‘좌’와 ‘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장에서 고찰했듯이, ‘좌’의 다양한 내원에 ‘사’가 포함된다는 점, ‘사’는 사학동 시기부터 문자를 습득했던 존재라는 점을 상기하면, 종래 지적된 직무의 유사성, 하급 서기관 설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모든 정무는 문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좌’·‘사’가 아닌 리원들이 문서를 작성한 사례들도 산견된다. 따라서 여기서 우선 ‘좌’자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뜻을 고려하면서 ‘좌’의 직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좌’자의 일차적인 뜻은 “돕다”, “보좌하다”이며, 여기서 파생되어 “보좌하는 사람”³⁸이라는 뜻이 생겼다. 간독에서도 리원을 가리키는 ‘좌’를 제외한 대부분의 ‘좌’자는 “무릇 양리(良吏)는 … 청렴하고 충성스러우며 성실하여 훌륭하게 윗사람을 보좌한다”³⁹ 및 “주조(鑄造)를 돕다”, “몰래 전(錢)을 주조하거나 도화서 만든 자는 기시(棄市)에 처한다”⁴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37 Tsang Wing Ma는 일찍이 『이야진간』 중 ‘某(이름)+手’의 사례들을 분석한 바 있다. 그는 ‘手’者 앞에 표시된 문서 작성자의 이름을 단서로 그의 관직을 확인한 후, 관직별 문서 작성 통계를 내었다. 통계 결과를 보면, ‘사’와 ‘佐’의 문서 작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Tsang Wing Ma (2017), pp. 326-327.

38 李學勤 主編(1999),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上·中·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p. 1115, 襄公30年, “有趙孟以爲大夫, 有伯瑕以爲佐.”;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 主編, 邵增樺 註譯(1983), 『韓非子今註今譯』上冊「定法」, p. 13, “申不害, 韓昭侯之佐也.”

39 『수호지진간』 「語書」, 簡9, “凡良吏明灋(法)律令, 事無不能毆(也); 有(又)廉潔(潔)敦慤而好佐上.”

40 『수호지진간』 「封診式」, 簡19, “告曰: 丙盜鑄此錢, 丁佐鑄.”; 『이년율령』 「錢律」 p. 170, 簡201, “盜鑄錢及佐者, 棄市.”

있듯이, 여전히 “돕다”, “보좌하다”의 의미가 주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좌’의 직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 (1) 田畝에 거주하는 백성에게는 감히 술을 팔아서는 안 되니, 田耆夫·部佐는 이를 엄격히 금지시켜야 한다. 법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有罪이다.⁴¹
- (2) • 少內(耆夫) 某와 (少內)佐 某로 하여금 시장의 정가에 따라서 縣丞 某 앞에서 丙을 매입하도록 함에, 丙은 中人으로, 약간의 돈이 몸값으로 소요되었다.⁴²
- (3) 戍者が 성을 쌓거나 보수하면 (그들에게) 성벽을 1년 동안 유지토록 하는데, 성에 무너진 곳이 있는 경우, 縣司空과 署君子로 감독한 자는 각각 貲 1갑에 처한다; 縣司空佐로 감독을 주관한 경우, 貲 1盾에 처한다.⁴³

(1)은 전색부(田耆夫)의 하속 부좌(部佐)와 관련한 내용이다. 부좌는 전부(田部)의 좌, 즉 전좌다. 전좌는 향내 징세 책임자인데,⁴⁴ 농번기에는 전색부와 함께 전사(田畝)에 기거하는 백성들의 관리도 책임지고 있다.⁴⁵ (2)는

41 『수호지진간』 「田律」, 簡12, “百姓居田畝者毋敢酤(酤)酉(酒), 田耆夫·部佐謹禁御之, 有不從令者有臯(罪).”

42 『수호지진간』 「封診式」, 簡39, “• 令少內某·佐某以市正賈(價)賈丙丞某前, 丙中人, 賈(價)若干錢.”

43 『수호지진간』 「秦律雜抄」, 簡40-41, “戍者城及補城, 令姑(婢)堵一歲, 所城有壞者, 縣司空署君子將者, 貲各一甲; 縣司空佐主將者, 貲一盾.”

44 『수호지진간』 「法律答問」, 簡157, “部佐爲匿田, 且可(何)爲? 已租者(諸)民, 弗言, 爲匿田; 未租, 不論○爲匿田.”

45 김중희는 田耆夫와 田部를 모두 縣廷 아래 官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동시에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田耆夫는 田部の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는 官職名이고,

금전을 관장한 기구인 소내(少內)에 관한 내용이다. 「봉진식」 고신(告臣) 원서(爰書)의 일부로, 노예의 주인인 사오 갑(甲)이 현에게 불량한 노예 병(丙)의 매입을 요구하였고, 그 대금을 소내색부(少內畜夫)와 소내좌(少內佐)가 지불하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소내좌의 업무 중 하나가 색부를 도와 관노(官奴)·사노(私奴)의 매입 대금을 지불⁴⁶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은 사공좌(司空佐)에 대한 것이다. 주지하듯, 사공은 관노비나 자벌(賈罰)·속형(贖刑)·국가에 대한 채무를 노역으로 대신한 사람들을 관장하며, 때에 따라 각 향(鄉)과 부서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한다. 또한 토목·수리·수공 생산 및 그 판매도 담당한다.⁴⁷ (3)의 사공좌 역시 관할 노동력을 활용한 성벽의 수축과 보수를 감독 책임지고 있다. 즉, (1)~(3)에서 실제 ‘좌’의 직무는 자의대로 상급관인 색부를 보좌해 행정 실무를 처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로 문서 행정을 담당했다고 알려진 ‘사’와는 직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야진간』에 ‘사’가 문서 행정 이외의 ‘좌’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료가 있다. 바로 곡물 출납과 관련한 사료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4) 丙廩粟米二石. 令史扁視平.

卅一年十月乙酉, 倉守妃、佐富、稟人援出稟屯戍士五(伍)孱陵咸陰敵臣.

富手.⁴⁸

田部는 田畜夫 및 휘하 吏가 근무하는 管轄名이라고 한다[김중희(2014), pp. 83-85. 각주 83 참조].

46 이야진간에는 少內佐가 徒隸의 매입에도 관여한 정황이 보인다. 簡9-1408, “遷陵少內匚買徒隸用錢匚萬三千匚少內匚佐之匚匚.”[游逸飛·陳弘音(2013.12.22.), 「里耶秦簡博物館藏第九層簡牘釋文校釋」, 簡帛網, (<http://www.bsm.org.cn/?qinjian/6146.html>)에서 재인용 함].

47 진대司空에 대해서는 이성규(2014)를 참조하라[이성규(2014), pp. 31-39].

48 『이야진간(1)』, 簡8-1545.

(5) 徑廡粟米一石二斗半斗. 卅一年二月己丑, 倉守武·史感·稟人堂出稟隸妾援.

令史狂視平. 感手.⁴⁹

(4)와 (5)는 모두 진시황 31년(B.C. 216) 천릉현에 속한 각각의 괴(廡)에서 속미(粟米)를 출납한 기록이다. 비록 서술 순서가 약간 다르지만, 양자의 형식과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 모두 “출납한 곡물의 양+출납시기+출납 담당자[창색부(倉番夫)·사(史)·품인(稟人) or 창색부(倉番夫)·좌(佐)·품인(稟人)]+출납대상자+감독관[령사(令史)]+문서작성자[좌(佐) or 사(史)]”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두 간의 차이점은 (4)에서는 창좌가 창색부를 도와 곡물을 출품한 동시에 그 정황을 기록한 반면, (5)에서는 ‘사’가 (4) ‘좌’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출품 사례에서는 ‘사’도 ‘좌’와 동일하게 색부를 도와 출납 담당자인 동시에 기록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창(倉)의 입출납에 대한 율령을 살펴보자.

(6) ㉠ 禾를 (廡에) 들일 때는 1만 [석을 1적으로 하여] 울타리를 치고, (廡에) 문(戶)을 설치하고서, 이를 ㉡ “廡禾若干石, 倉番夫 某·佐 某·史 某·稟人 某.”라고 기록해 둔다. 縣에서 (禾를) 들일 때는 縣番夫 혹은 丞 및 倉·鄉이 공동으로 (廡를) 봉인하고, ㉢ 倉番夫 및 離邑의 倉佐로서 (禾의) 출납을 주관하는 자가 각기 문을 하나씩 맡아 사람들에게 (禾를) 주도도록 한다. (廡에서) ㉣ 禾를 꺼낼 때도 꺼낸 자를 기록하는데, 禾를 들일 때와 동일하게 한다.⁵⁰

49 『이야진간(1)』, 簡8-2249.

50 『수호지진간』「效」, 簡168-170, “㉠入禾, 萬[石一積而]比黎之爲戶, ㉡籍之曰: “廡禾若干石, 倉番夫某·佐某·史某·稟人某.”是縣入之, 縣番夫若丞及倉·鄉相雜以封印之, 而㉢遺倉番夫及離邑倉佐主稟者各一戶, 以氣(餼)人. ㉣其出禾, 有(又)書其出者, 如入禾然.”

(6)은 물자 장부의 검증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 효율(效律)의 일부이다. 본 조문은 화를 입피(入廡)하고 출피(出廡)할 때는 피의 문에 출납된 화의 양과 출납을 담당한 자를 기록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출납 담당자는 총 4인, 바로 창색부·좌·사·품인(傭)으로, (4)·(5)의 출납 관련자들 모두가 확인된다. 여기서 내용상 관련이 되는 부분은 ㉔이다. ㉔는 명확하게 화를 출품하는 자는 창색부와 창좌(倉佐)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부분에서 곡물 수급 대상자에게 출품할 때 실무 담당자는 색부와 ‘좌’로서, ‘사’는 실제 배급과는 무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창에서 ‘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는 화를 창고에 들일 때의 ㉓와 반대로 꺼낼 때의 ㉔에서 등장한다. 그 원인은 ㉓·㉔가 바로 ‘적’(籍)·‘서’(書)와 같은 기록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피에서 출납이 이루어질 때, 현장에서 매 출납의 정황을 ‘사’가 기록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㉔의 관련자 명단에 창색부·창좌·품인과 더불어 ‘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창에서도 원칙과 동일하게 ‘좌’는 색부의 보좌를, ‘사’는 문서 행정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2)에서 ‘사’(史)가 본 업무인 문서기록 이외 출납도 담당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상황은 진제국 시기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추측된다. 예컨대 「천릉리지」가 작성된 시점에 천릉현의 리원은 정원의 절반 정도인 50명 남짓만 있었던 것도 관리 부족의 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뿐 아니라 천릉수승(遷陵守丞) 이(配)가 현의 거리(居吏)가 적어 급사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상부에 여러 차례 인력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한 것도⁵¹ 당시 관리 부족의 실태를 여실히 전하고 있다. 진제국은 관리가 부족할 경우 현정(縣廷)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관(守官)과

51 『이야진간(1)』, 簡8-197, “世四年正月丁卯朔辛未, 遷陵守丞配敢言之: 遷陵黔首佐均史佐日有泰(大)抵已備歸, 居吏枝繇(徭)使及前後書, 至今未得其代, 居吏少, 不足以給事。史吏, 謁報, 署主吏發, 敢言之。二月丙申朔庚戌, 遷陵守丞配敢言之: 寫上旦, 令佐信行。報別臧。正月辛未旦, 居賁枳壽陵左行。”

가리(假吏)라는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⁵² 하지만 수관이나 가리를 두기에 앞서 상황에 따라 조직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라면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선행되었을 것이다. 『이야진간』 간9-363 창수(倉守) 처(處)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 준다.

(7) 朔丁巳, 倉守處, 儻(稟)人嬰出稟更戍留滎陽不更售. 令佐章視平.

處手.⁵³

(7)도 출품간의 일종이다. 창수 처와 품인 영(嬰)이 유현(留縣) 영양리(滎陽里) 출신인 갱수(更戍) 수(售)에게 양식을 꺼내 주었고, 이 상황을 영좌(令佐) 장(章)이 시평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간문이 여타 출품간들과 다른 점은 3가지이다. 첫째, 출품(出稟)을 담당한 자가 ‘색부·좌·품인’ 혹은 ‘색부·사·품인’이 아니라 ‘창수(창색부 대리)·품인’ 단 2인으로만 구성되었다. 둘째, 시평 담당관이 영사가 아니라 영좌이다. 셋째, 대부분의 사례에서 출품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작성자는 ‘좌’나 ‘사’인데 반해, 본 간문에서는 창수 혼자서 출품과 기록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즉, 갱수 수에게 곡물을 출품할 그때 모종의 이유로 ‘좌’와 ‘사’ 모두가 부재하여, 창수가 품인과 단둘이서 수에게 출품하고, 또한 창수가 그 결과까지 기록하였던 것이다.

(4)와 (5)도 (7)과 동일한 이유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선 (6)을 보면, 출납에 관여하는 담당자는 원칙상 창색부·좌·사·품인 4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4)에서는 창색부·좌·품인, (5)에서는 창색부·사·품인으로 각각 3인으로만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4)·(5)를 제외한 기타

52 김동오(2021), 「〈里耶秦簡〉에 보이는 守官의 유형과 假吏의 의미」, 『中國古中世史研究』 59; 유창연(2022); 孫聞博(2012), 「里耶秦簡“守”·“守丞”新考: 兼談秦漢的守官制度」, 『簡帛研究2010』; 李鵬·李忠林(2022), 「秦漢“守官”的幾個問題辨析」, 『南都學壇』 2022-04; 青木俊介(2020), 「秦代における守官任職者について: 遷陵縣の官吏移動狀況から」, 『東洋史研究』 78.

53 『이야진간(2)』, 簡9-363.

출품간도 대부분이 3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 출품간에서 ‘좌’와 ‘사’가 함께 확인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이러한 정황 역시도 비록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만성적인 관리 부족이라는 당시 상황에 맞춘 수시변통으로 여겨진다. 본래 출품 시 4인이 한 팀이 되어 곡물을 출납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관리 부족 현상으로 부득이하게 ‘사’가 본업인 문서 행정 이외 일부 ‘좌’의 업무까지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으로 ‘좌’ 역시도 본업을 하면서 동시에 ‘사’가 담당한 기록의 업무까지 직접 처리했던 것이다. 따라서 ‘좌’와 ‘사’의 직무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좌’와 ‘사’는 모두 문서 행정을 담당하지만, 실제 주된 직무는 전자는 ‘색부의 보좌’, 후자는 ‘문서 행정’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겠다.

4. ‘사’의 의미와 성격 변화

지금까지 ‘좌’와 ‘사’의 내원과 직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천릉리지」에 ‘관좌’만이 확인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좌’와 ‘사’의 공통분모가 되는 ‘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천릉리지」는 리지(吏志)가 제작된 바로 그 시기 천릉현 리원의 정황을 전하는 자료이다. ‘좌’의 경우, 「천릉리지」에서 관좌로서 리원(吏員)에 포함된 것에서 ‘좌’는 ‘리’(吏)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좌’처럼 ‘사’가 ‘리’인지를 여부를 따진다면, 「천릉리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가 ‘리’인지, ‘리’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서로 상충되는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1) 五 “功令: ‘吏에 缺이 있으면, 功勞 순서에 따라 그 자리를 메운다.’ 옛날 諸侯의 子로써 關中으로 遷徙된 자 (중)에는 史가 있어 吏로 삼을 수 있습니다만, 그들을 쓰면 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議: “郡守·縣令

은 관할 郡縣으로 천사된 諸侯의 子 중 史로써 吏가 될 수 있는 자를 선발해 乘車 이하 吏로 보임하도록 하라.”⁵⁴

- (2) •佐史 이상의 吏는 감히 黔首를 벌해서는 안 된다. 不從令者是 貲 2甲에 처하고, 면직시킨다. 나머지는 율령대로 하라. ·十七⁵⁵

(1)은 얼마 전 출간된 『장가산336호』 「공령」의 일부다. 공령간(功令簡)은 치리(置吏)하거나 혹은 승진할 때에 고과 자료가 되는 공로(功勞)에 대한 것, 예컨대 공·로의 작성방식과 적용 원칙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하고 있다. (1)은 먼저 관중(關中)지역에 천사된 제후의 아들들 중에는 ‘리’로 삼을 수 있는 ‘사’⁵⁶가 있으나, 이들을 기용할 경우 (공로가 없기 때문에) “吏有缺, 以功勞次補之”이라는 령(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여기서 ‘사’는 첫째, ‘리’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점, 둘째, 현재 ‘리’가 아닌 탓에 공

54 荊州博物館 編, 彭浩 主編(2022), 『張家山漢墓竹簡(336號墓)』上, 北京: 文物出版社(이하 『장가산336호』로 약칭) 「功令」, 簡42-43, “五功令: 吏有缺, 以功勞次補之. 故諸侯子徙關中者頗有吏, 可以爲吏, 用之不應(應)令. 議: 令郡守、縣令擇諸侯子徙其己郡、縣, 吏可以爲吏者, 以補乘車以下吏.”

55 『악록진간(6)』, 簡205, “吏自佐史以上毋敢罰黔首, 不從令者, 貲二甲, 免. 它如律令. ·十七.”

56 曹旅寧은 「功令」 簡42-43 조문의 ‘史’는 ‘不史’와는 대비되는 일정한 문화 지식을 가진 자로, 독서 능력과 공문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작문 능력을 갖춘 『이년율령』 「史律」의 ‘사’와는 다른 존재로 보았다[曹旅寧(23.04.32), 「張家山336號漢墓《功令》“不史”“頗有史”“善書”“吏事”考釋, 簡帛網(<http://www.bsm.org.cn/?hanjian/8997.html>)]. 필자 역시 前漢 중기 이후로 ‘사’는 ‘어느 정도 문화가 있는’, ‘저급의 식자능력을 갖춘 자’로 의미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가산336호』 「공령」은 첫째 漢文帝가 즉위한 후 연호를 개정하기 전인 呂后 8년(B.C. 180) 8월 병신일에 반포되었다는 점, 둘째 편성연대가 同墓에서 나온 「七年質日」의 紀年(한문제 7년, B.C. 173)과 결부 지어 한문제 2년에서 7년 사이에 해당한다는 점[郝勤建·彭浩(2022), 「湖北江陵張家山M336出土西漢竹簡概述」, 『文物』2022-09, pp. 68-69.]에서 실제 여후 시기의 『이년율령』과는 시간적 격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공령」의 ‘사’를 굳이 『이년율령』의 ‘사’와 다르게 볼 여지도 없는 듯 하다. 필자는 「공령」의 ‘사’도 「사술」의 ‘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자격 소지자’의 ‘사’라고 해석하였다.

로가 없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임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에서는 명확하게 ‘사’를 ‘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사’는 율령에 동일하게 ‘사’로 명시되었지만, 일부는 이미 ‘리’이며, 다른 일부는 현재 ‘리’는 아니지만 ‘리’가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과연 ‘사’는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 ‘관사’·‘민사’(民史)가 하나의 단서가 될 것 같다.

(3) 縣道官은 官史·佐의 勞의 순서에 따라, 斗食·令史로 보임하되, (관련 문건은) 올리지 말라.⁵⁷

(4) 卅五 “大行의 일은 모두 奏聞하여 긴급한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佐·史에 缺이 있으면, 民史를 빼서 보결해야 하나,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議: 대행의 官佐에 결이 있으면, 中尉가 선임해 옮겨 보결하고, 少府 관속에 比하도록 하라.”⁵⁸

(3)은 현도관(縣道官)이 두식(斗食)과 영사를 보임할 때는 그들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인 관사와 관좌의 로(勞)의 순서에 따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관사는 현에 소속된 하급 관부를 관장하는 관색부 휘하의 창사(倉史)·고사(庫史) 등을 총칭하는 단어이다.⁵⁹ 관사는 관에서 일하는 ‘사’로, 명칭상 후술할 민사와는 대비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관에서 시사(視事)하기 때문에 ‘리’라고 불렸을 것이고, 확정된 시사일은 로로 계산⁶⁰되어 향후 승진 등의 고과(考課) 자료로 사용되었다.

57 『장가산336호』 「공령」, 簡25, “縣道官自次官史、佐勞, 補斗食、令史, 勿上.”

58 『장가산336호』 「공령」, 簡103, “大行事皆奏聞謹恐(急), 佐史缺, 除民史者補, 不習事.”

59 오준석(2020), p. 16; 西眞輝 논문 중 〈附表1 遷陵縣の官職名整理〉에서도 田史·司空史 등 다양한 官史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西眞輝(2021), pp. 524-525].

60 『장가산336호』 「공령」, 簡12-13, “吏自佐史以上, 各以定視事日自占勞, 勞盈歲爲中勞, 中勞四歲爲一功, 從軍勞二歲亦爲一功. 壬. 身斬首二級, 若捕虜二人各爲一功. 軍論之爵二級爲半功.”

한편 관견에 한 해 ‘민사’는 사료상 처음으로 확인된다. 관사가 관에서 시사한 ‘사’라면, 민사는 관에서 시사하지 않은 ‘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4)에서 민사가 대행(大行) 좌·사의 결을 채우기에 부적합했던 원인을 불습사(不習事)에서 찾고 있는 것 역시 민사가 시사하지 않은 ‘사’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호지진간 묘주 희(喜)의 경우, 진시황 3년(B.C. 244) 8월에 ‘사’가 된 이후 4년 11월에 안륙향사(安陸鄉史)가 되기⁶¹ 이전까지 3개월 동안은 민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⁶² 그렇다면 민사는 리에 속하는가? 이들은 관에서 시사하지 않은 터라 리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민사는 문서 행정이 가능한 ‘사’라는 ‘자격’을 취득한 자격 소지자일 뿐인 것이다. ‘사’를 ‘자격’ 또는 ‘자격 취득자’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의 전제 조건이 시험의 합격에 있기 때문이다.

‘사’가 ‘자격’이라면, ‘리’로 분류되는 ‘관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는 최종 시험에 통과한 이후 관사가 되기 이전까지 제관(諸官)에서 각종 문서행정과 업무 방식을 익히는 자들이며, 이들이 어느 정도 업무에 숙달되면 ‘관사’라는 ‘직’(職)에 임명된다고 보고 있다.⁶³ 기존 연구자들이 지적한 ‘사’는 본고에서 말하는 ‘민사’에 해당한다. 가령 민사인 기간 동안 이들이 제관에서 각종 업무를 익혔다면, (4)에서 굳이 민사를 불습사라고 하며 대행의 일에서 배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법률상 ‘사’의 수습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면, 수습을 이유로 ‘사’를 무작정 제

61 『수호지진간』 「葉書」, 簡10貳-11貳, “三年, … 八月, 喜掄史. 【四年】, … 十一月, 喜□安陸□史.”

62 본고에서는 민사를 ‘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향사·창사 등의 관사가 되기 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민간 혹은 민들 중 사’의 자격을 지닌 자로 보았다. 반면 魯家亮은 본고에서 말하는 민사를 관사에 부임하기 전 일종의 말단 소리인 ‘小史’라고 하였다[魯家亮(2018c), 「里耶秦簡所見“小史”芻議」, 『出土文獻的世界: 第六屆出土文獻青年學者論壇論文集』, 中西書局]. 민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소사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소사, ‘小’字와 ‘少’字의 의미 및 ‘사’의 연령 문제를 등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63 魯家亮(2018), pp. 218-219.

관에서 부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기존 견해와는 달리 ‘사’란 단순한 ‘자격 소지자’이며, ‘관사’란 ‘사’가 구체적인 직에 임명되지 않은 채 ‘자격 소지자’로서 관에서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사’와 ‘직’의 유무는 아래 ‘좌’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명확히 구분된다.

만약 모종의 대상이 구체적인 ‘직’이 있다면, 업무상 과오가 발생할 경우 그들은 당연히 문책될 것이다. 아래 사례들은 이른바 관좌·관사들이 배치되어 시사하는 제관에서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관련 처벌들을 규정한 것이다.

(5) 다 자란 암컷 소 10마리 중 6마리가 새끼를 낳지 못하면, 齋夫·佐에게 각각 貲 1盾을 부과한다. 암컷 양 10마리 중 4마리가 새끼를 낳지 못할 경우, 齋夫·佐에게 貲 1盾을 부과한다.⁶⁴

(6) 광물의 채굴 실적이 거듭 하등 판정을 받으면, 齋夫에게는 1甲, 佐에게는 1盾을 부과한다.⁶⁵

(7) … 不備하였는데, 그 가치는 490전이다. 少內(齋夫) 段, (少內)佐 卻이 각각 245전씩 부담한다. … 瘳가 작성함.⁶⁶

현 내 제관의 기본적인 조직은 ‘색부’-‘좌’·‘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5)~(7)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처벌받을 때 일관되게 ‘사’만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6)은 담당 업무의 고과에서 하등 판

64 『수호지진간』 「秦律雜抄」, 簡31, “牛大牝十, 其六毋(無)子, 貲齋夫、佐各一盾. • 羊牝十, 其四毋(無)子, 貲齋夫、佐各一盾.”

65 『수호지진간』 「秦律雜抄」, 簡21-22, “采山重殿, 貲齋夫一甲, 佐一盾.”

66 『이야진간(1)』, 簡8-785, “不備, 直錢四百九十. 少內段、佐卻分負各二百卅五. 瘳手.”

정을 받을 경우,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규정한 조문이다. 여기서도 역시 문책 대상은 색부와 ‘좌’만이다. 주지하듯이 색부는 현의 생산과 그 조직을 관할하며, ‘좌’는 색부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사’는 문서 행정을 주로 담당한다. 즉, 제관에서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사’란 본래 생산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생산에 관한 처벌 대상에서는 빠진 것일 수도 있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오히려 ‘사’가 원래 문서행정 담당자로 생산조직과 무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색부 조직에 정원 이외의 존재로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촉군(蜀郡) 서공(西工)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인 칠기(漆器) 명문(銘文)을 보도록 하겠다.

촉군 서공에서 제작한 칠기들은 1924년 평양 석암리(石岩里) 병분(丙墳)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것이다. 명문에는 칠기의 제작에 관여한 관리들이 기록되어 있다. 구조는 대부분 “기년(紀年)+촉서왕(蜀西王)+장(長)·승(丞)·호공졸사(護工卒史)·수령사(守令史)·**색부(嗇夫)·좌(佐)**+휴공(髡工)·단공(丹工)·화공(畫工)”으로 동일하다. 장·승에서 색부·좌까지는 감조관리(監造官吏)에 해당하며, 공종(工種) 및 공장(工匠)의 명칭인 휴공(髡工)·단공(丹工)·화공(畫工)은 제작공장(制作工匠)에 해당한다.⁶⁷ 여기 바로 감조관리에서도 색부·좌’는 확인되지만 ‘사’는 보이지 않는다. 즉, 실제 ‘사’는 생산직과 무관하였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직(史職)에 해당하는 졸사(卒史)·영사가 칠기 명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생산직과 무관하다 해서 제작 관여자에 배제되는 것 같지는 않다. 명문에 ‘사’만이 등장하지 않은 까닭은 역시 ‘사’는 ‘직’을 가지지 않은 혹은 ‘직’에 임명되지 않은 ‘자격’·‘자격 소지자’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7)은 비록 앞부분이 잔결되었지만, 소내(少內)와 관련된 점에서 금전

67 “始元二年，蜀西工，長廣成、丞何放、護工卒史勝、守令史母夷、嗇夫索喜、佐勝、髡工當、畫工文造。”；“始元二年，蜀西工，長廣成、丞何放、護工卒史勝、守令史母夷、嗇夫索喜、佐勝、髡工當、澠工將夫、□□□□。” 해당 명문은 白雲翔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였다[白雲翔(2014), 「漢代“蜀郡西工造”의考古學論述」, 『四川文物』 2014-06, p. 39].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모종의 일에 회계상 490전의 부족액이 발생하자, 그 금액을 색부와 ‘좌’가 반액씩 각각 분담하여 배상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7)의 경우는 (5)·(6)과는 달리 ‘사’도 책임 소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학동 시절 학이(學僮)에게 갑자(甲子)·산(算)·마(馬)·대잡(大雜)의 교육을 받았기⁶⁸ 때문에, ‘사’도 문서 혹은 회계 업무에 충분히 간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까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는 ‘자격 소지자’로서 관에서 시사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는 기본적으로 ‘자격’, ‘자격 소지자’를 가리킨다. 즉, ‘민사’든 ‘관사’든 관계없이, ‘사’들은 정규직을 받기 이전의 ‘자격 소지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원 이외의 존재인 것이다. 이 관점에서 <천릉리지>를 다시 살펴보자. ‘좌’는 색부를 보좌한다는 확실한 직무가 있었고, 이런 까닭으로 <천릉리지>의 리원 구성에 ‘좌’라는 ‘직’에 제수된 ‘관좌’들은 포함될 수 있었다. 반면, ‘관사’들은 아직 정규직을 받기 이전의 ‘자격 소지자’로서 관에서 수습을 활동한 존재다. 따라서 이들은 리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 혹은 ‘자격 소지자’를 의미하는 ‘사’는 전한(前漢) 중기 무렵 정도부터는 ‘자격’이라는 의미 이외에 어느 정도 식자능력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된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전국(戰國) 진(秦)부터 한초(漢初)까지는 ‘사’ 선발의 주요 목표가 ‘리’로 삼는 것에 있는 만큼 ‘사’라는 것은 문서 행정에 관한 보편적인 ‘자격’·‘자격 소지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다.

68 張春龍(2010), 「里耶秦簡中遷陵縣學官和相關記錄」, 『出土文獻』 1, p. 232.

5. 맺음말

지금까지 문헌 사료와 간독 자료에서 보이는 ‘좌’·‘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리(縣吏) 중 최말단에 배치된 ‘좌’·‘사’는 질(秩)이 같으며, 직무에서도 상호 유사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런 이유로 종래 연구자들은 ‘좌’·‘사’를 정확히 구분·구별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하지만 첫째, ‘좌’의 자격 조건은 법률상 성인을 뜻하는 ‘장(壯)일 뿐이지만, ‘사’의 자격 조건은 사자(史子)의 신분으로서 일정한 학습 기간을 거친 이후 시험의 합격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좌’·‘사’는 기본 자격 조건이 확연히 다른 집단이다. 둘째, ‘좌’의 직무는 ‘좌’자의 의미대로 상급관인 색부의 보좌인 반면, ‘사’의 직무는 ‘사’자의 의미처럼 문서의 기록 및 작성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업무가 유사하게 보였던 까닭은 ‘사’가 바로 ‘좌’의 대상자 중 하나라는 점과 진제국 시기 관리의 부족 현상 때문에 임시변통으로 ‘사’가 본업 이외 일부 ‘좌’의 직무까지도 담당한 데 있다. 셋째, ‘좌’는 색부의 보좌라는 구체적인 ‘직’이 있는 리원이지만, ‘사’는 ‘직’이 없는 ‘자격’·‘자격 소지자’로서 ‘리’가 아니다. 바로 ‘직’과 ‘자격’이라는 차이점 때문에 ‘좌’·‘사’는 비록 동질이지만, 표기할 때는 습관적으로 ‘좌’가 ‘사’보다 선행되거나, ‘좌’가 ‘사’보다 상급⁶⁹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술한 세 가지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좌’·‘사’는 명확하게 구분되며, 또한 구별되어야 한다.

‘사’는 시험에서 합격하여 얻은 ‘자격’의 일종이다. 사학동은 학실에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식자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들은 그간의 경험과 획득한 자격을 바탕으로 ‘사’가 된 이후 비로소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즉, 3년이라는 오랜 학습 기간과 5천 자 이상을 암기해야만 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는 결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69 『이년율령』 「史律」, 簡482, “吏備(德)罷、佐勞少者, 毋敢擅(擅)史、卜.”

따라서 문서 행정이 발달하고, 문서의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습제에 의해 임용되던 ‘사’만으로는 행정상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사’의 성격에도 변화가 발생해 전한 중기 이후부터 ‘사’는 종래 ‘자격’의 의미와 함께 저급 직자능력의 유무 표현할 때도 사용되게 된다. 거연한간(居延漢簡)의 ‘사’·‘불사’(不史)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 (1) 玉門千秋隧長 敦煌 武安里 公乘 呂安漢, 나이 27세, 키 7척 6촌. 神爵 4년 6월 신유일까지 功은 1, 勞는 3년 9개월 2일이나, 그 (중) 30일은 부친이 불행히도 사망하여 居喪했기에 제외함. 功은 1, 勞는 3년 8개월 2일로 확정함. 9월 晦 경술일에 마감함. 과거에는 不史, 현재는 史.⁷⁰

(1)은 옥문천추수장(玉門千秋隧長) 여안한(呂安漢)의 공과 로를 기록한 공로간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로간 배면 말미에 “과거 불사였지만, 현재는 사”라는 부분이다. 즉, 여안한이 신작 4년(B.C. 58) 6월 수장(隧長)에 임명될 때 그는 ‘불사’의 상태였으나, 이후 어느 시점에 ‘사’가 된 것이다. 만약 ‘사’가 직(職)의 일종이었다면, 여안한이 ‘사’가 된 이후 그의 수장직이나 혹은 직무에는 변화가 발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가 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사’를 시험으로 획득한 일종의 ‘자격’, 혹은 ‘자격 소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⁷¹ 그러나 수장

70 吳初驤·李永良·馬建華 釋校,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編(1991), 『敦煌漢簡釋文』,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p. 122, 簡1186AB, “玉門千秋隧長敦煌武安里公乘呂安漢年卅七歲長七尺六寸神爵四年六月辛酉除功一勞三歲九月二日其卅日(A) 父不幸死憲定功一勞三歲八月二日訖九月晦庚戌故不史今史(B).”

71 김병준은 ‘能書’와 ‘史’를 구분하고, 한대 하급 관리는 능서의 조건만 갖추어도 임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불사’라고 해도 문서를 읽고 간단한 행정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연한간 簡1186AB에 대해서는 ‘불사’로 임용된 이후 일정한 과정을 거쳐 ‘사’의 지위를 얻었다고 보았다[김병준(2011),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pp. 48-53]. 그러나 이 경우, 수장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3년간 학실에서 학습하고 시험을 치른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분명 어려움

이 주장직을 이행하는 동시에 ‘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기에는 ‘사’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다.

중앙에서 반포된 각종 정책은 군사 조직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도위부(都尉府)-후관(候官)-부(部)-수(燧)의 순서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문서가 최종적으로 전달된 것은 수이다. 이처럼 수는 어느 정도 문서기록과 유관한 장소이므로 수장은 분명 문서를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명령 접수 및 보고 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것은 수의 상급 단계인 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부에서 소속 수에 배치된 수졸(戍卒)의 근무 기록과 수에서 발생한 문제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한 자는 후장(候長) 혹은 후사(候史)다. 즉, 후장·후사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식자능력이 요구되었지만,⁷² 수장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낮은 단계의 식자능력만 갖추어도 충분했을 것이다. 따라서 (1)의 ‘사’·‘불사’의 표현이 사용되던 시기, 즉 전한 중기 이후부터 ‘사’의 개념은 이미 『이년율령』 「사율」에서 말하는 ‘자격’의 ‘사’와는 다른 저급의 식자능력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사료

- (漢)班固 撰, (唐)顏師古 注, 楊家駱 主編, 『漢書』,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孫星衍 等輯·周天游 點校(1990), 『漢官舊儀』卷下『漢官六種』, 北京: 中華書局.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 主編, 邵增樺 註譯(1983), 『韓非子今註今譯』上册.

이 있다.

- 72 富谷至는 명령의 접수와 보고를 담당한 部의 기능을 고려해, 部의 후장·후사는 반드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후장·후사를 바로 『이년율령』 「사율」에서 말하는 시험을 통해 ‘사’의 자격을 획득한 ‘사’ 출신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富谷至(2010), 第2編 第1章 「書記官への道: 漢代下級役人の文字習得」, 『文書行政の漢帝國: 木簡·竹簡の時代』,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pp. 116-121].

- 朱漢民·陳松長 主編(2013), 『嶽麓書院藏秦簡(參)』,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陳松長 主編(2020), 『嶽麓書院藏秦簡(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陳松長 主編(2017), 『嶽麓書院藏秦簡(伍)』,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陳松長 主編(2015), 『嶽麓書院藏秦簡(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陳偉 主編(2018), 『里耶秦簡牘校釋(第2卷)』, 武漢(漢): 武漢大學出版社.
- 陳偉 主編, 何有祖·魯家亮·凡國棟 撰著(2012), 『里耶秦簡校釋(第1卷)』,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 陳偉 主編(2014), 『秦簡牘合集[壹]上: 睡虎地秦墓簡牘』,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 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2007), 『二年律令與秦讖書』(張家山二四七號漢墓出土法律文獻釋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李學勤 主編(1999),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上·中·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荊州博物館 編, 彭浩 主編(2022), 『張家山漢墓竹簡(336號墓)』上, 北京: 文物出版社.

연구서

- 嚴耕望(1974), 第5章 「縣廷組織」, 『中國地方行政制度史』上編, 臺北: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專刊45.
- 吳祜驥·李永良·馬建華 釋校,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編(1991), 『敦煌漢簡釋文』,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 富谷至(2010), 『文書行政の漢帝國: 木簡·竹簡の時代』,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 鶴間和幸(2018), 『始皇帝の遺産: 秦漢帝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연구논문

- 금재원(2018), 「秦代 '新地' 吏員의 구성과 그 한계」, 『中國古中世史研究』 49.
- 김동오(2021), 「〈里耶秦簡〉에 보이는 守官의 유형과 假吏의 의미」, 『中國古中世史研究』 59.
- 김동오(2020), 「秦帝國시기 縣吏 운용과 지방통치: 〈里耶秦簡〉 遷陵吏志 분석을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57.
- 김동오(2014), 「秦帝國시기 縣廷의 구조: 『里耶秦簡』 '令史'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6.
- 김병준(2018), 「표지로서의 虛辭: 秦漢시기 법률 속 '及'의 어법적 기능」, 『中國古中世史研究』 48.
- 김병준(2011),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 김종희(2014), 「秦代 縣의 曹조직과 地方官制: 里耶秦簡에 나타난 遷陵縣의 토지 재정운영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8.
- 오준석(2020), 「秦代 '以吏爲師'와 '史'職의 위상」, 『東洋史學研究』 152.
- 유창연(2022), 「秦代 縣吏의 運用과 '新地' 統治」, 『中國古中世史研究』 65.

- 이성규(2022), 「秦帝國의 '新地' 統治策: 縣吏難의 타개책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61집 1호.
- 이성규(2014), 「秦帝國 縣의 組織과 機能: 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53집 1호.
- 이성규(2003), 「秦漢帝國의 官과 爵의 相輔 機能: 張家山竹簡〈二年律令〉을 중심으로」, 韓國古代社會研究所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강좌 한국고대사』 3.
- 이성규(1989a), 「秦의 山林藪澤開發의 構造: 縣廷 齋夫組織과 都官의 分析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29.
- 이성규(1989b),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그 性格: 縣의 組織과 그 機能을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31.
- 高敏(1979), 「'有秩'非'齋夫'辨」, 『文物』 1979-03.
- 高震寰(2021), 「對里耶秦簡《遷陵吏志》的另一種假設」, 『法律史譯評』 9.
- 裘錫圭(1992), 「齋夫初探」, 『古代文史研究新探』, 江蘇古籍出版社.
- 單印飛(2018), 「秦代縣級屬吏的遷轉路徑: 以里耶秦簡爲中心」,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8-01.
- 魯家亮(2018a), 「里耶秦簡所見秦遷陵縣吏員的構成與來源」, 『出土文獻』 13.
- 魯家亮(2018b), 「里耶秦簡所見秦遷陵縣的令史」, 『簡牘學研究』 第7輯,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 魯家亮(2018c), 「里耶秦簡所見“小史”芻議」, 『出土文獻的世界: 第六屆出土文獻青年學者論壇論文集』, 中西書局.
- 劉向明(2009), 「從睡虎地秦簡看縣令史與文書檔案管理」, 『中國歷史文物』 2009-03.
- 劉向明(2004), 「從出土秦律看縣“令史”一職」, 『齊魯學刊』 2004-03.
- 劉曉滿(2011), 「秦漢令史考」, 『南都學壇』 2011-04.
- 白雲翔(2014), 「漢代“蜀郡西工造”的考古學論述」, 『四川文物』 2014-06.
- 聶姣豔(2014), 「秦漢“史”職研究」, 雲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孫聞博(2017), 「里耶秦簡《遷陵吏志》考釋: 以“吏志”·“吏員”與“員”外群體爲中心」, 『國學學刊』 2017-03.
- 孫聞博(2016), 「二十等爵確立與秦漢爵制分層的發展」, 『中國人民大學學報』 2016-01.
- 孫聞博(2012), 「里耶秦簡“守”·“守丞”新考: 兼談秦漢的守官制度」, 『簡帛研究2010』.
- 王博(2021), 「簡牘所見史職與秦漢基層行政」,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 王斌帥(2017), 「秦漢縣廷令史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游逸飛(2012), 「太史、內史、郡-太史、內史、郡-張家山《二年律令·史律》所見漢初政區關係」, 『歷史地理』.
- 游逸飛·陳弘音(2013.12.22.), 「里耶秦簡博物館藏第九層簡牘釋文校釋」, 簡帛網, (<http://www.bsm.org.cn/?qinjian/6146.html>)(접속일: 2023.3.29.)
- 李玥凝(2020), 「秦簡“君子”身分再探」, 『古文字研究』 33.
- 李鵬·李忠林(2022), 「秦漢“守官”的幾個問題辨析」, 『南都學壇』 2022-04.
- 張春龍(2010), 「里耶秦簡中遷陵縣學官和相關記錄」, 『出土文獻』 1.

- 趙岩(2014), 「秦令佐考」,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01.
- 曹旅寧, 「張家山336號漢墓《功令》“不史”“頗有史”“善書”“吏事”考釋」, 簡帛網(<http://www.bsm.org.cn/?hanjian/8997.html>)(접속일: 2023.4.26.).
- 朱騰(2017), 「秦縣中的史類吏員研究」, 『中國人民大學學報』 2017-06.
- 周海鋒(2017), 「嶽麓書院藏秦簡《置吏律》及相關問題研究」, 『出土文獻與法律史研究』 6.
- 鄒水傑(2016), 「簡牘所見秦代縣廷令史與諸曹關係考」, 『簡帛研究2016』, 春夏卷,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鄒水傑(2017), 「秦簡“有秩”新證」, 『中國史研究』 2017-03.
- 郝勤建·彭浩(2022), 「湖北江陵張家山M336出土西漢竹簡概述」, 『文物』 2022-09.
- 西真輝(2021), 「秦漢代における佐史の變遷について」, 『東洋史研究』 79(4).
- 水間大輔(2016), 「里耶秦簡《遷陵吏志》初探: 通過與尹灣漢簡《東海郡吏員簿》的比較」, 『簡帛』 12, 上海古籍出版社.
- 秦代出土文字史料の研究」班: 齋藤賢·畑野吉則·藤井律之·宮宅潔·宗周太郎·目黒杏子(2018), 「嶽麓書院所藏簡《秦律令(壹)》譯注稿その(二)」, 『東方學報』 93.
- 青木俊介(2020), 「秦代における守官任職者について: 遷陵縣の官吏移動狀況から」, 『東洋史研究』 78.
- 土口史記(2015), 「秦代の令史と曹」, 『東方學報』 90.
- Ma, Tsang Wing (2017), “Scribes, Assistants, and the Materiality of Administrative Documents in Qin-Early Han China: Excavated Evidence from Liye, Shuihudi, and Zhangjiashan,” *T'oung Pao* 103-4-5.

원고 접수일: 2023년 5월 1일, 심사완료일: 2023년 5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3년 5월 10일

ABSTRACT

Rethinking Zuoshi of the Qin and Han Periods

Kim, Ji-Eun*

“Zuoshi” (佐史) is sometimes written as “Zuo” (佐) and “Shi” (史) or “Zuoshi” (佐史) in historical records. For this reason, conventional researchers have also used the term interchangeably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whether it is “Zuoshi”(佐史) or “Zuo”(佐)·“Shi”(史). First of all, this article confirms that the term “Zuoshi”(佐史) is used to refer to a group of ‘lower-level officials’ who receive the same zhilu (秩祿), including the lowest-level “Zuo”(佐)·“Shi”(史) in the bureaucratic system. In other words, it is my basic position that “Zuoshi”(佐史) do not exist separately and should be categorized and distinguished as “Zuo”(佐) and “Shi”(史).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the duties of the “Zuo”(佐) and “Shi”(史) prefectural officials, who are the last of the prefectural officials. First, however, the qualification for the position of “Zuo”(佐) is only zhang (壯), which legally means an adult, while the qualification for the position of “Shi”(史) is the status of a shizi (史子), which requires passing an examination after a certain period of study. The duties of a “Zuo”(佐) are to be an assistant to a superior officer, “Shefu”(嗇夫), in the sense of “Zuo”(佐), while the duties of a “Shi”(史) are to record and create documents in the sense of “Shi”(史). Thirdly, while “Zuo”(佐)

* 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n official with a specific 'job title' as an assistant to the "Shefu" (嗇夫), "Shi" (史) is a 'qualification' or 'qualification holder' without a 'job title' and is not an official.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position" and "qualification", although "Zuo" (佐) and "Shi" (史) were equivalent, "Zuo" (佐) was habitually written before "Shi" (史) or "Shi" (史) seemed to be more senior than "Shi" (史), when writing. However, "Shi" (史), which means 'qualification' or 'qualification holder', was never an easy qualification to obtain through examinations. Therefore, as document administration developed and the amount of documents processed increased, "Shi" (史), which was appointed by the hereditary system, could not handle the administrative demands. For this reason, the nature of "Shi" (史) also changed, and from the middle Han period onwards, "Shi" (史) was used to express the presence or absence of low-level literacy skills alongside its traditional meaning of 'qualification'.

Keywords Qin·Han Period, Zuo (佐), Shi (史), Position, Qualification, 'Liyeqinjian' (里耶秦簡), Yueluqinjian (嶽麓秦簡), Zhangjiashanhanjian (336haomu) (張家山漢簡336號墓)